

특 집

OSHA의 상해 및 질병 기록 보관 기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기준에서는
사업주가 상해 및 질병을 기록할 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업무상 상해 및 질병을 기록 보관하는 미국 안전보건청(OSHA)에 의한 개정판의 새로운 기준은 그 대부분이 2002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운 기준은 경영자로부터는 소극적인 지지를 받고 근로자측으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며 근로자의 참가 기회를 늘리고 서류 양식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OSHA의 규칙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컴퓨터 이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차오 노동부 장관(U.S. Department of Labor)은 새로운 기준을 신년 초부터 실시하는 것을 발표하면서 「이 규칙은 근로자를 위해 안전한 사업장을 확립하기 위한 커다란 전진이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이용하여 사업주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간략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안전보건 전문가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안전협회(NSC)의 안전보건 주임 컨설턴트인 조켈버스씨는 새로운 기준은 「종래의 문서를 전향적으로 확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종래의 문서에는 난해한 법률 용어가 많았다.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직자원 카운셀러(Organization Resources Counselors' 워싱턴)인 윌리엄 아멘트씨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은 전체적으로 종래의 문서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시점에서는 규칙의 중요한 2개의 부분이 실시되지 않는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업무 관련성 청력 손실에 관한 기록 기준의 실시를 1년간

연기하고 그 사이에 「중대한」 건강상태로서 기록해야 할 청력 손실 정도를 자세하게 검토한다.

또 새로운 기준에서의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사업주에 의한 OSHA의 근골격계 질환 항목으로의 기입 의무까지도 1년간 연기한다. 미국 노동동맹(AFL-CIO)의 안전보건부장은 현 시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요 보도내용

새로운 기록 보관 기준은 청력 손실 및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기준을 제외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 양식에 상해와 질병 항목이 통합되어 알기 쉽게 되었다
- 새로운 기준은 결근 일수를 취업일로 하지 않고 역일(曆日)로 계산한다.
- 근로자가 300양식의 기록부에 개인 기밀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 이행기간 중 사업주는 200양식과 101양식의 복사를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갱신할 필요는 없다

강력하게 요구되는 개선점

켈버스씨의 설명에 의하면 종래 문서는 근 30년 전에 제정된 이래 많은 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 사용이 어렵게 되었다. 새로운 기준에서는

OSHA의 상해 및 질병 기록 보관 기준

구 문서에 추가된 지침을 모두 적절한 항목으로 이동시키고 정리했다. 또 「Q&A」의 항목을 신설하여 새로운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알기 쉽도록 했다. 「이전과 같이 확실적인 문서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켈버스씨는 말한다.

켈버스씨가 지적하는 주된 변경점은 다음과 같다.

- 알기 쉬운 서식
- 간단한 기업 절차
- 가장 중요한 것은 상해 및 질병에 의한 결근일수의 계산 방식 변경으로서 향후에는 취업일로 하지 않고 정오 0시 이후를 적용하는 일수를 사용한다

취업일이 아닌 역일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손실일수 계산이 더욱더 타당하게 되었다고 켈버스씨는 말한다. 새로운 기준을 예를 들면 주말의 휴일, 기념일, 휴가 일수도 포함시킨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결근한 취업일의 일수만을 기록한다는 것을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기록 보관 방식이 되면 근로손실일수만을 근거로 하여 안전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기업은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켈버스씨는 말한다.

또 「역일(曆日) 계산으로 되면 근로손실일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계는 마음이 내키지가 않을 까도 생각된다」 것도 말한다.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측정 시스템인 것이다. 재해 예방 과정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손실일과는 별도 측정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근로손실일 만이 측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안전한 사업장을 제공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부적당하여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OSHA의 통계학자의 제임스 매덕스씨는 새로운 신고양식으로서 수속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된다고 말한다. 또 기록보관 규칙이 명확히 될 뿐만 아니라 새

근로손실일수
만을 근거로 하여
안전 프로그램을 제정
하는 기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로운 기준은 상해 및 질병을 301양식에 통합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것 이외에도 켈버스씨는 새로운 기준의 개선점을 몇 가지 지적한다

-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업무상의 상해 및 질병의 신고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기업 경영진에 300양식의 기록부의 인증을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 주사침 등 예리한 물체에 관련된 재해를 대상에 추가

변경점의 이해

이상과 같은 변경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협회 등의 업계단체는 실시의 1년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정착되기에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제조업협회는 새로운 기준의 발효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지금도 법적 대응 중이다.

켈버스씨는 이러한 것에 반론한다. 새로운 기준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업은 2002년까지 순응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업자가 새로운 기준을 염려하는 것은 상해에 대한 청구와 상해 논쟁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켈버스씨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은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새로운 규칙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순응(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기인하지만 미국 제조업협회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1년으로 말할 것까지는 없다. 켈버스씨는 어떠한 기준도 만능의 치료약은 없다고 지적한다. 능숙하게 잘 적응하는

특 집

기간 중이라면 그 사업주는 실수를 범하고 그 결과 벌금과 벌칙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쉬정부와 OSHA의 존 헨쇼 담당 차관보는 순서 측면에서의 지원과 파트너십을 확신하고 있고 OSHA는 새로운 신고양식의 기입으로 실수가 있어도 사업주에게 관대한 태도로 직면하는 것도 없다.

미국안전협회의 제89회 연차 총회 및 엑스포(애틀란타)에서 헨쇼 차관보는 사업주에게는 동 청으로서 가능한 지원을 준다고 말했다. 그래서 「자료를 배포하고 위성 중계에 의한 세미나와 회의도 개최하여 새로운 기준을 설명할 예정이다. OSHA의 웹사이트에도 유익한 정보를 다수 게재하고 있다」 「각종 업계 단체의 협력을 얻을 자료 작성에 매진하고 또 중소기업에도 보급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라고 말했다.

OSHA의 매진뿐만 아니라 미국안전협회도 새로운 기준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다.

많은 분야에서의 변경

기록보관의 새로운 기준에서는 많은 변경과 개선이 고쳐지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OSHA의 매덕스씨에 따르면 1904.4 Subpart C는 새로운 기준의 중심을 기록의 규격기준을 표시하고 있다. 기본요건은 각 사업자가 사망, 부상, 질병 기록을 보관하고 또 다음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망, 부상, 질병을 기록하는 것이다.

-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
- 새로운 사건(사상)일 것
- 1904.7의 일반적 기록규격기준의 하나 혹은 복수에 해당하거나, 1904.8에서 1904.12까지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건(사상)에 해당하는 것

1904.7조는 일반적인 기록 규격기준을 나타내고

새로운 기준에 결함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규칙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있다. 1904.8조에서 1904.12조까지는 주 사침 및 예리한 물체에 의한 부상, OSHA 기준을 기초로 한 의학적 절제를 동반한 사건, 직업성 청력 손실을 동반한 사건(현재는 검토 중) 업무 관련성 결핵의 사건, 업무 관련성 근 골격계 질환의 사건(이것도 검토 중)에 대한 기록 규격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다른 업무 관련의 경우와 같이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기록 해야만 한다고 매덕스씨는 지적한다. 또 더욱더 「새로운 기준은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일정의 유예를 주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까지 기록 할 의무는 없다.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직이 근로자에게 결근을 권고한 경우 사업주는 그것을 따르도록 근로자에게 촉구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권고를 받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결근일수는 기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수의 의사 혹은 보건의료 전문직에 의한 권고에 틀림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권고가가 가장 타당한가를 결정하여 그 권고를 근거로 한 사건(사상)을 기록한다. 의사 혹은 보건의료 전문직이 근로자에게 복직을 권고 했지만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기준은 의사 혹은 보건의료 전문직의 권고일을 가지고 결근일수 계산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결근일수에는 曆日 180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사업주는 曆日 180일을 넘는 근로자가 결근한 일수는 계산하지 않아도 좋다. 부상에 의한 사망, 혹은 질병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는 기록부의 내용을 갱신하고 가장 심각한 상태를 기록 해야만 한다고 매덕스씨는 말한다.

상기 이외의 변경점으로서 모든 재해는 구 기준의 6취업일 이내에서는 아니고 曆日의 7일 이내에 보고해야만 한다.

OSHA의 상해 및 질병 기록 보관 기준

새로운 기준은 출장 및 재택근무에 관련된 문제도 나타내고 있다. 매덕스씨에 따르면 출장 중의 근로자가 호텔에서 샤워를 하다가 부상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방문 중에 부상한 경우 이러한 재해는 업무 관련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 관련 임무를 행할때에 부상, 이것 이상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적인(사생활, 개인적인)문제

사생활 보호가 확립된 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아마 가장 중요한 변경일 것이다.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300양식의 기록부에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개별로 사건(사상)수와 근로자 이름을 기재한 부외비의 일람표를 보관해야만 한다. 이러한 사상의 내용을 갱신하고 정부로부터 요구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매덕스씨에 의하면 사생활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래와 같다.

- 신체의 성적 부분 혹은 생식기관의 부상 혹은 질병
- 성적 폭행에 기인하는 부상 혹은 질병
- 정신질환
- HIV감염, 간염, 혹은 결핵
- 타인의 혈액 혹은 타의 잠재적 감염성 성질로 오염된 주사침 혹은 예리한 물체에 의한 부상 혹은 절상
- 자신의 이름을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요청

이것 이외의 사상은 사생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매덕스씨는 근로자에게는 301양식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 것을 되풀이하여 기술한다. 동시에 새로운 기준은 근로자, 원 근로자 및 그 개인 혹은 당국 대리인

에 의한 부상/질병 기록의 열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지적한다. 더욱더 모든 사업주는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부상 및 질병의 신고 상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또 종래 규칙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매덕스씨는 말한다. 「근로자가 301양식의 열람을 요구하기 전에 이름을 삭제하는 규정은 없다. 다수의 사업주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매덕스씨에 의하면 이행 기간 중 사업주는 200양식 및 101양식의 사본을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양식을 갱신할 필요는 없다.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주

9월 11일의 동시 다발 테러 피해가 있는 사업장은 테러로 사망하거나 테러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기록의무는 면제된다. 